# 필리핀의 해외이주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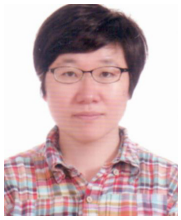

**이 혜 진**
제1저자(부산대학교)
(portsait@gmail.com)

**김 희 재**
공동저자(부산대학교)
(khjjh@pusan.ac.kr)

**최 송 식**
교신저자(부산대학교)
(choiss@pusan.ac.kr)

**국문요약**

필리핀은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을 송출하는 국가이다. 이 글에서는 필리핀이 해외이주를 어떻게 촉진시킬 수 있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해외 필리핀노동자(Overseas Filipino Workers)와 재외필리핀인(Overseas Filipino)들을 원활히 송출하고, 관리 및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8A01054492).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해 왔는지 고찰했다. 우선 필리핀인의 해외이주의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이주의 역사를 되짚어본 후, 이주정책이 어떻게 발생하여 변화해갔는지에 대해 법률 정비, 관련 정부기관 설립, 재외필리핀인 우대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해외의 필리핀인들이 보내오는 송금의 역할에 대해 정리하여, 현재 필리핀의 이주정책에 대한 전체상을 파악했다.

**주제어** : 필리핀, 해외이주, 해외 필리핀노동자, 재외필리핀인, 이주정책

# Ⅰ. 들어가며

지난 40년 동안 필리핀은 세계의 주요 노동력 송출국으로 자리잡았다. 세계 1위 송출국인 멕시코의 경우, 이주자의 대다수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필리핀의 이주자들의 흐름은 특정 국가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필리핀은 자국민의 고용처로서 국제노동시장을 성공적으로 다루면서 관리해왔다.

이 글에서는 필리핀이 해외이주를 어떻게 촉진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해외 필리핀노동자(Overseas Filipino Workers: OFWs)와 재외필리핀인(Overseas Filipino: OF)들을 관리 및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해 왔는지 살펴볼 것이다. 필리핀이 세계 굴지의 송출국이 된 것에 대해서, 인구증가에 부합하는 고용창출의 부재, 필리핀노동자의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 전 세계적인 필리핀인 네트워크의 존재, 필리핀정부에 의한 재외필리핀인에 대한 지원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Burgess 외 2005). 이 글에서는 특히 필리핀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이주 관리 부분, 즉 필리핀정부의 이주정책과 법제도에 대해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필리핀인의 해외이주의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이주의 역사를 되짚어본 후, 이주정책이 어떻게 발생하여 변화해갔는지에 대해 법률 정비, 관련 정부기관 설립, 재외동포정책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해외의 필리핀인들이 보내오는 송금의 역할에 대해 정리하여, 현재 필리핀의 이주정책에 대한 전체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 Ⅱ. 필리핀인의 해외이주

## 1. 필리핀인의 해외이주 현황

재외필리핀인 수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추정치는 2012년 말 집계로 1,000만 명을 넘어섰

다. 이것은 같은 시기 필리핀의 노동력인구(labor force) 3,760만 명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수치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1)]

필리핀 통계청(National Statistical Office)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매년 100만 명가량의 노동연령인구(Working-Age Population)의 증가와 매년 60만 명 정도의 노동력인구의 증가를 보인다. 그러나 필리핀정부가 영구적 이주자와 일시적 계약 노동자를 전 세계적으로 배치시킴으로써 매년 필리핀에서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의 노동연령인구가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것은 필리핀 국내노동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Bayangos 외 2011, 1837).

재외필리핀인은 주로 3가지 범주, 즉 영구적 이주자(Permanent migrants), 일시적 이주자(Temporary migrants), 비정규 이주자(Irregular migrants)로 분류된다. 영구적 이주자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영구 체류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이들은 필리핀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거나 목적국에서 귀화한 시민들에 해당한다. 일시적 이주자는 해외에 머무는 동안 정규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 체류하는 필리핀인들로, 목적국에서의 그들의 지위는 한정적인 체류자격이거나, 고용계약과 관계된다. 그래서 일시적 이주자는 계약노동자, 주재원, 학생, 연수생, 기업가, 비즈니스맨, 무역업자 등 6개월 혹은 그 이상을 해외에서 머무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비정규 이주자는 적절한 방식으로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해외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그들은 유효한 체류 및 노동 허가를 갖고 있지 않다. 즉, 이들은 정해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노동자이거나 관광비자나 단기비자로 입국한 사람들로 상정할 수 있다.

2012년도의 전체 재외필리핀인의 추정치는 동년도 필리핀 전체인구 9,418만 명의 11%를 넘어섰다. 2000년에서 2012년까지 재외필리핀인은 300만 명가량 증가했으며, 이는 매년 26만 명 정도의 인구가 필리핀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을 살펴보면, 2012년도의 영구적 이주자는 약 500만 명을 기록하여 2000년도 수치에서 2배의 증가를 보여, 근래의 재외필리핀인의 체류 형태가 영구적 이주자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시적 이주자도 증가세를 보이지만 세계정세에 따른 부침을 보여주고 있으며[2)], 비정규 이주자의

---

1) "2012 Annual Labor and Employment Status(Annual estimates for 2012)" from http://web0.psa.gov.ph/content/2012-annual-labor-and-employment-status-annual-estimates-2012

2) 일시적 체류자는 3차례의 감소기를 보인다. 첫 번째 감소기는 1989년에서 1990년 사이에 중동지역의 인프라 건설 붐이 끝나고 건설관계의 노동집약적 분야에서의 취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후 기계 작동이나 유지 부문의 기술자, 의사, 간호사 등 의료노동자로서 일하는 필리핀인이 증가했다. 두 번째 감소기는 1995년이다. 동년 싱가폴에서 필리핀인 가사노동자인 플로어 콘셉시옹이 처형되었다. 그녀는 살인죄 용의로 기소되었으나, 누명을 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필리핀정부는 싱가폴정부에게 탄원했으나, 결국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로 인해 양국관계가 악화되어 필리핀은

경우는 2000년에서 2012년까지 약 50만 명의 감소를 보인다.

영구적 이주자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부양자까지 포함한다. 이 인구 중 절반 정도만이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공신력 있는 통계에서 지적되고 있다. 일시적 이주자와 비정규 이주자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단신 상태에서 외국으로 일을 하러 나가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수치들은 조금 더 상승할 것이다. 물론 일시적 이주자는 결국에는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일시적인 부재에도 불구하고 다시 노동력인구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근래의 필리핀인구의 해외 유출은 가정 내의 노동력 공급의 감소를 의미한다 (Bayangos 외 2011, 18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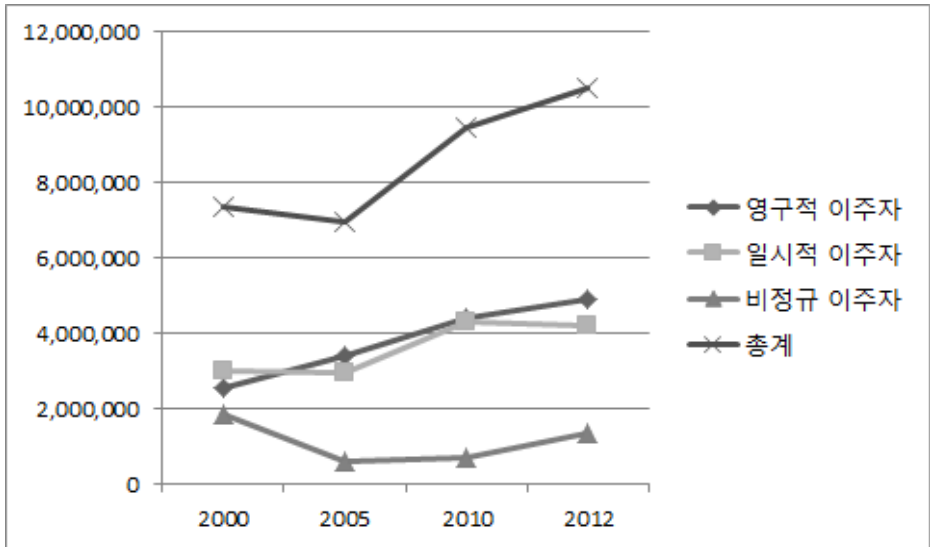


〈그림 1〉 재외필리핀인의 증감 추이(2000-2012)

자료: CFO(Stock Estimate of Overseas Filipinos)[3)]

---

싱가폴에 가사노동자의 파견을 1년간 정지시켰다. 그 동안 보고되었던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상황에 콘셉시옹 사건이 불을 지펴, 필리핀인의 해외이주노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어, 재외필리핀인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 제정과 보호조치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와, 2000년대 후반의 에스트라다 대통령의 부정부패로 인한 정치위기로 다시 해외로의 이주노동의 움직임이 증가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소기는 2003년 홍콩에서의 SARS(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유행과 미군의 이라크 침공이 원인이 되어, 홍콩으로의 가사노동자의 도항이 감소했고, 이라크에서의 취업이 금지되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감소기의 경우는 목적국의 상황에 좌우되는 일시적 이주자들의 불안정한 위치를 드러내며, 두 번째 감소기는 송출국 필리핀 자체의 자정노력 및 국내정세에 따른 변화양상을 보인다(Gonzalez 1998; 佐竹 2009, 101-102).

3) http://www.cfo.gov.ph/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40%3Astock-estimate-of-overseas-filipinos&catid= 134&Itemid=68

〈표 1〉에 따르면, 2012년 말 재외필리핀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위 10위의 목적국은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방, 캐나다, 말레이시아, 호주, 일본, 영국, 쿠웨이트 그리고 카타르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중에 영어권 국가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필리핀인이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영어권 국가로의 진출을 용이하게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영구적 이주자의 분포가 가장 많은 곳도 역시 미국과 캐나다이다.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화한 이후로 많은 수의 필리핀인들은 이른 시기부터 미국으로 이주하고 있었다. 캐나다의 경우도 이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펴왔으며, 다문화정책 등으로 이주자에게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거주하는 필리핀인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가지고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비해, 일시적 이주자, 주로 이주노동자가 많이 파견되고 있는 곳은 아시아지역에서도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방, 홍콩 등이다. 종교적 보수성과 남성주의 가부장제문화를 가진 중동지역에서는 영구적 이주자의 비율이 현격히 떨어지지만, 오일머니의 영향으로 계약 이주노동자의 수요가 증가했다. 한편, 비정규 노동자가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는 지역은 필리핀과 지역적으로 근접한 말레이시아이며, 그 다음으로 미국과 아랍에미리트연방, 사우디아라비아가 뒤를 이었다.

**〈표 1〉 2012년 말 집계 재외필리핀인 추정치**

단위: 명(%)

| 지역/국가 | 영구적 이주자 | 일시적 이주자 | 비정규 이주자 | 총계 |
|---|---|---|---|---|
| **전 세계** | **4,925,797(46.96)** | **4,221,041(40.24)** | **1,342,790(12.80)** | **10,489,628(100)** |
| **아프리카** | **4,641** | **47,992** | **8,240** | **60,873** |
| **동아시아 · 남아시아** | 286,627 | 798,510 | 514,215 | 1,599,352 |
| 홍콩 | 13,251 | 176,877 | 5,000 | 195,128 |
| 일본 | 158,978 | 77,248 | 6,910 | 243,136 |
| 말레이시아 | 26,006 | 212,951 | 447,590 | 686,547 |
| 대만 | 4,521 | 78,207 | 2,225 | 84,953 |
| 한국 | 13,942 | 41,354 | 13,615 | 68,911 |
| 기타 | 69,929 | 211,873 | 38,875 | 320,677 |
| **서아시아** | **7,478** | **2,449,583** | **378,475** | **2,835,536** |
| 쿠웨이트 | 502 | 207,136 | 6,000 | 213,638 |
| 사우디아라비아 | 354 | 1,159,634 | 107,670 | 1,267,658 |
| 아랍에미리트연방 | 1,711 | 722,621 | 207,230 | 931,562 |
| 카타르 | 16 | 172,000 | 28,000 | 200,016 |
| 기타 | 4,895 | 188,192 | 29,575 | 222,662 |

| 지역/국가 | 영구적 이주자 | 일시적 이주자 | 비정규 이주자 | 총계 |
|---|---|---|---|---|
| **유럽** | **392,195** | **219,816** | **156,315** | **768,326** |
| 영국 | 160,881 | 32,896 | 25,000 | 218,777 |
| 이탈리아 | 53,819 | 83,509 | 34,820 | 172,148 |
| 독일 | 46,790 | 8,116 | 2,080 | 56,986 |
| 그리스 | 121 | 26,167 | 26,000 | 52,288 |
| 프랑스 | 8,687 | 1,008 | 42,090 | 51,785 |
| 스페인 | 21,380 | 8,969 | 2,925 | 33,274 |
| 기타 | 100,517 | 59,151 | 23,400 | 183,068 |
| **아메리카/신탁통치지역** | **3,875,930** | **240,827** | **279,595** | **4,396,352** |
| 캐나다 | 759,802 | 87,304 | 5,295 | 852,401 |
| 미국 | 3,096,656 | 126,625 | 271,000 | 3,494,281 |
| 기타 | 19,472 | 26,898 | 3,300 | 49,670 |
| **오세아니아** | **358,926** | **97,448** | **5,950** | **462,324** |
| 호주 | 329,348 | 58,637 | 3,720 | 391,705 |
| 기타 | 29,578 | 38,811 | 2,230 | 70,619 |
| **어업노동자** | **0** | **366,865** | **0** | **366,865** |

출처: Stock Estimate of Overseas Filipinos as of Dec. 2012
자료: 외무부(DFA), 필리핀해외고용청(POEA), 재외필리핀인위원회(CFO)

## 2. 필리핀인의 해외이주 역사

### 1) 필리핀인의 해외이주의 계기: 미국의 식민지 지배

1906년에 처음으로 미국으로 이주한 필리핀인들은 루손섬 북부 일로코스지방 출신 남성으로, 하와이의 사탕수수농원의 노동자가 되었다. 그 후 1946년까지 하와이의 대규모농장에서 일했던 필리핀인수는 12천 5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Griffiths 1988, 16; 細田 2010, 99 재인용). 필리핀인 노동자는 하와이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는 농업노동자로, 알래스카에는 통조림공장 노동자로 진출했다(Gonzalez 1998, 29; 細田 2010, 99 재인용). 미국 식민지 통치시기에는 필리핀인에게 'Special non-citizen national status'라는 특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의 이주자와 귀화자가 증가했다.

1934년, 미국이 필리핀인의 귀화자수를 제한했지만, 점차 완화하여 1946년 필리핀이 미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까지 매년 100명씩 미국으로의 귀화자수를 할당했다. 이로 인해, 군 관계자, 의사, 간호사, 기술자 등의 전문직 종사자가 영구적 이주자로서 미국으로 건너갔다.

필리핀이 독립한 이후에도 미국과 관련한 해외취업 형태는 지속되었다. 필리핀인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아시아 각지, 즉 베트남, 태국, 일본, 괌 등지에서 건설되는 미군기지에 고용되었다. 미군에서의 외국인의 수요는 군인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의 직무도 필요로 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인 엔터테이너의 해외 진출은 미군기지와 그 주변지역에서 밴드연주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확대된 것이다.

1965년에는 미국 이민개정법으로 가족재통합이 용이해져, 다시 필리핀인들의 미국 이주가 증가했다. 더욱이 미국계 건설기업의 이란과 이라크 등지의 해외 진출에 힘입어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필리핀인들이 고용되기 시작했다. 한편, 이시기부터 국제해운업에서의 취업도 증가하여, 필리핀인 선원은 해당업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Alegado 1992, 154-169; Gonzalez 1998, 31-32; Abrera-Mangahas 1987, 1, 11; 細田 2010, 99 재인용).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식민지화로 비롯된 필리핀인의 해외취업은 미국 통치하에 성립된 교육제도 및 영어사용으로 인해, 필리핀인들은 근대식 예절과 영어구사력을 지닌, 경쟁력을 가진 '세계의 일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4)]

### 2) 중동으로의 건설노동자 파견과 해외취업제도 확립

필리핀의 해외취업의 판도가 바뀌게 된 것은 1970년대이다. 1974년 마르코스 대통령은 오일쇼크로 인한 불경기를 완화시키기 위해 해외 노동과 송금을 장려하면서, 본격적으로 해외고용정책을 도입했다. 1970년대 중반까지 베트남전쟁 중에 미군이 필리핀 하청업체를 고용하여 이들이 필리핀노동자를 송출하게 된다. 이러한 해외고용 경험을 살려 중동지역으로 필리핀노동자를 송출하게 되는데, 당시 건설 붐이 일고 있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지의 석유산유국에는 필리핀노동자가 급증했다.[5)] 중동에서 일하는 필리핀노동자들은 계약기간에만 체류할 수 있는 일시적 노동자였다. 이들이 이후 해외로 도항하는 필리핀인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1980년대가 되면, 중동의 건설 붐은 일단 안정세를 보이지만, 빌딩이나 공장의 유지 인원, 제조업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중동으로 향하는 흐름은 멈추지 않았다. 한편, 동 시기에 필리핀 국내의 경제 침체와 정치 불안이 심각해져, 1984년 실질 GNP 성장률은 -7.1%를 기록하여, 필리핀 독립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 이로 인해 필리핀인들

4) 미국 지배하의 공교육과 필리핀사회의 개조에 대해서는 이혜진(2013)을 참조하라.

5) 지금까지 미국 관련 이주에서는 전문직과 기술직의 자격증 취득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중동지역의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할 때는 자격증이 요구되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두뇌유출(brain drain)'에서 '근육유출(brawn drain)'의 시대가 되었다고 회자되었다(笹川 2010, 127).

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시 마르코스 정권은 경제를 살려서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해외취업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다(笹川 2010, 100).

### 3) 이주의 여성화와 목적국의 다양화

1990년대 이후로 해외 이주 필리핀인은 몇 가지 변화를 보인다. 첫째는 이주의 여성화 현상인데, 이것을 촉진시킨 것은 유럽, 북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지역에서의 재생산 및 돌봄노동을 담당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이다. 한편, 엔터테이너로서 필리핀 여성노동자가 보내졌는데, 특히 일본에는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수만 명 규모로 유입되었다. 필리핀에서는 가계를 돕기 위해 여성이 가족을 떠나 해외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문화적 저항감이 낮다는 것도 이주의 여성화 현상을 강화시키도록 작용했다고 한다(Hosoda 1996). 이주의 여성화 현상과 관련하여, 목적국의 다양화가 현저해졌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여전히 산유국,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 해외로 가는 필리핀노동자의 과반수가 향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세계 218개국으로 진출해 있다. 이처럼 해외이주가 일상이 되어버리는 동안, 필리핀정부의 재외필리핀인에 대한 정책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그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1995년 이주노동자 및 재외필리핀인법'의 제정이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까지 강조되어 왔던 노동력수출보다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 3. 필리핀정부의 이주정책

### 1) 해외이주 관련 법률 정비

① 1974년, '노동법'(대통령령 442호) 제정

1974년 마르코스 정권은, 당시 오일쇼크에 의한 오일붐으로 중동지역의 건설노동력 수요가 증가한 것이 계기가 되어 적극적인 해외고용정책의 추진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해외로의 이주노동이 필리핀 정부정책으로 공식화되었고, 마르코스 정권의 우선과제로 설정되었다. 실업해소, 대외채무변제를 위한 외화 획득, 해외로부터의 기술이전 등의 목표를 설정했는데, 초기법은 이주노동자의 고용 촉진과 보호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 되어 있으며, 노동이주를 필리핀의 실업상태의 일시적인 해결책으로 간주했다. 이 법에서는 민간업자를 통한 직접고용을 금지하고, 점차 확대되는 중동지역 노동력 수요에 대해 필리핀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응하도록 했으며, 국가정책으로서 필리핀 이주노동자 송출을 제도화 했다. 그러나 해외고용 계약건수의 급증으로 업무의 다양화 속도에 필리핀정부가 대응할 수 없게 되자, 4년 후인 1978년 정부는 해외취업 알선업무에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로 인해, 해외고용업무의 공적영역을 통한 관여는 점차 간접적인 방식으로 변화했다.

② 1982년, 대통령령 797호 공포

1974년 마르코스 정권은 해외고용개발국(Overseas Employment Development Board)과 해상노동자를 담당하는 국가선원국(National Seaman's Board)을 새롭게 설치하여, 해외고용알선의 제도화와 고용확대를 시작했다. 1982년에는 대통령령 797호를 공포하여, 위의 두 국과 함께 고용서비스국(Bureau of Employment Services)를 통합하여 필리핀해외고용청(Philippine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 POEA)을 창설했다.

③ 1987년, 행정명령 247호

1986년에 코라손 아키노 정권은 "해외 필리핀노동자는 국민의 새로운 영웅"이라고 칭송하며, 해외 필리핀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약속하면서, 행정명령 247호를 통해 필리핀해외고용청을 재편하고, 민간중개업자 규제 강화 및 해외취업 희망자 등록제도를 도입했다.

④ 1990년, '우편주문신부금지법(Anti-Mail Order Bride Law)'의 제정

1989년, 호주에서 필리핀여성 제네로사 봉코딘이 호주인 남편에게 폭행살해당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우편주문신부사업을 바라보는 필리핀 내부의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영리목적의 국제결혼 알선행위, 즉 국제결혼중개업을 비롯하여 이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들을 포괄적으로 불법화시켰다. 이로 인해, CFO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제공해오던 사전 정보프로그램(Pre-Departure Orientation Seminar)에 상담서비스(Guidance and Counseling Services)가 추가되었다.

⑤ 1995년, '이주노동자 및 재외필리핀인법(Republic Act No. 8042, The Migrant Workers and Overseas Filipinos Act)' 제정

1995년,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콘셉시옹 사건이 계기가 되어 노동송출국과 목적국 간의 불평등, 즉 목적국에 배해 낮게 평가되는 송출국의 경제력과 약한 정치력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필리핀정부가 해외의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사례로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라모스 정권하에 '이주노동자 및 재외필리핀인법'을 제정하여, 필리핀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력송출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합법적 채용, 서비스, 담당행정기관, 해외 필리핀노동자 관련 법률보조, 목적국가별 대책, 전문직과 기술직노동자 우대 등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해외고용정책의 제도화를 확충했다.

해외 필리핀노동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해외에서 재난을 입은 재외필리핀인(Overseas Filipino in Distress)'의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시킬 것을 법률로 규정했다. 이 법은 총체적인 이주노동자 관리 법안으로, 필리핀 노동부(DOLE, Department of Labour and Employment) 산하에 해외노동자복지청(OWWA, Overseas Workers Welfares Administration), 필리핀해외노동사무소(POLOs, Philippines Overseas Labor Offices) 등을 설치하거나, 기존 조직인 필리핀해외고용청을 재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⑥ 2003년 2월, '재외투표법(Overseas Absentee Voting Act)' 제정

이 법은 2004년 5월 국정선거에 처음으로 적용되어, 해외에서도 투표가 실시되었다. '재외투표법'은 송금에 의한 경제적 공헌을 정치적 권리 행사로 반영하기를 원하는 재외필리핀인(주로 해외의 필리핀노동자)들로 부터의 요구를 필리핀정부가 가까스로 받아들여 성립된 것이다. 법 제정 이후, 외무부에서 '재외투표사무국(Overseas Absentee Voting Secretariat)'이 개설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Commission on Elections: COMELEC)와 연계하여 정보캠페인, 재외선거인등록, 해외투표 실시 등이 추진되었다. 필리핀정부는 영구적 이주자들의 정치참여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정작 '재외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해외의 필리핀노동자, 즉 일시적 이주자였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재외투표법'에서 '재외투표'의 조건으로 '3년 이내 필리핀 귀국' 선서를 요구했었기 때문이다(Center for Migrant Advocacy Philippines 2004). 이 귀국에 대한 약속은 영구적 이주자들의 '재외투표' 참여의 방해요소가 되었다(小ケ谷 2005, 129-130).

⑦ 2003년 5월, '인신매매방지법(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of 2003)' 제정

이 법에서는 인신매매 행위들과 함께 국제결혼을 빙자한 인신매매, 즉 영리목적의 성매매 강요나 성적 착취,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결혼을 중개 혹은 제안하는 행위 역시 인신매매 범죄이며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명시화했다. 국제결혼을 빙자한 인신매매의 피해자들이 '이주노동자 및 재외필리핀인법'에 따라 여타 재외필리핀인에게 제공되는 것과 같은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⑧ 2003년 9월, '국적유보 및 재취득법(Citizenship Retention and Re-acquisition Act)' 제정

일명 '이중국적법(Dual Citizenship Law)'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주로 재미필리핀인 및 필리핀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목적국에 귀화한 필리핀인이 선서를 함으로써 필리핀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게 하고, 그 밖의 국가에 귀화한 필리핀인에 대해서도 필리핀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필리핀국적의 재취득에 따른 '재외투표

권'도 자동적으로 취득하게 되었다.

2) 해외고용 관련 정부기관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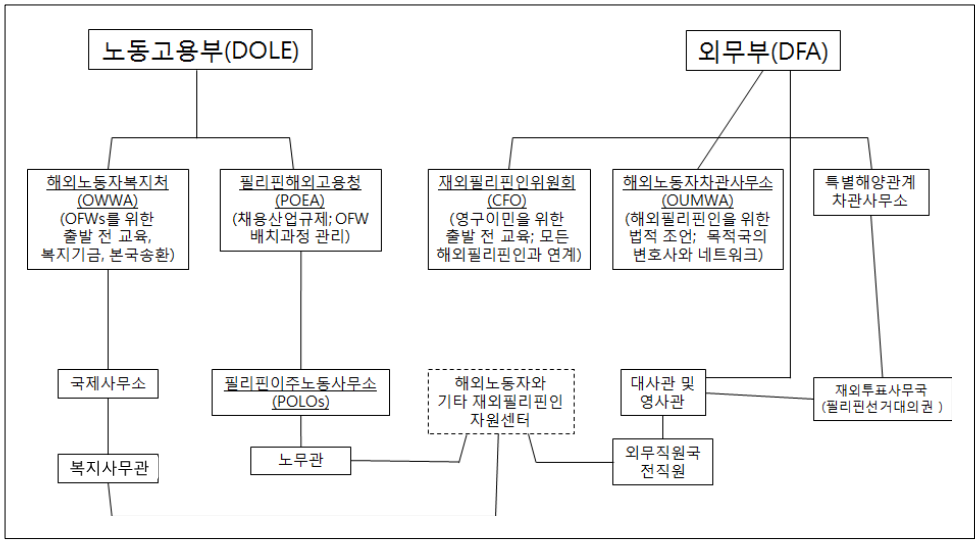


**〈그림 2〉 필리핀 정부기관의 이주관리 체계**

출처: Neil G. Ruiz. August 11, 2008. "Managing Migration: Lessons from the Philippines." Migration and Development Brief 6 : Migration and Remittances Team Development Prospects Group, The World Bank. 5 page.

자료: 노동고용부(DLE), 외무부(DFA), 필리핀해외노동청(POEA), 해외노동자복지청(OWWA).

필리핀해외고용청은 1982년 마르코스 정권 하에 설치된 노동고용부 관할 기관으로, 해외 필리핀노동자를 전담한다. 해외로 이주노동을 나가는 필리핀노동자들 모두가 필리핀해외고용청에 등록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주요 임무는 해외고용계약 승인과 외국인고용주의 인정, 해외고용허가증(Overseas Employment Clearance: OEC)의 발행 등 해외 송출 노동자의 도항에 관한 관리업무 및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Pre-Departure Orientation Seminar: PDOS)[6]과 세미나 그리고 민간알선 중개업자의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영구적 이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으로는 재외필리핀인위원회가 있다.

재외필리핀인위원회는 영구적 이주자로서 도항을 희망하는 사람과 외국인의 배우자가 될 사람들에 대한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 도항에 관한 여러 절차와 관련된 사무처리,

6) 모든 해외 필리핀노동자들은 해외 도항 전에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을 수강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은 직종과 행선지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이미 해외에 살고 있는 재외동포의 복지 · 후생을 담당하고 있다.

**〈표 2〉 필리핀해외고용청과 재외필리핀인위원회의 비교**

| 필리핀 이주관련 정부기관 | 필리핀해외고용청 (Philippine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 POEA) | 재외필리핀인위원회 (The Commission on Filipino Overseas, CFO) |
|---|---|---|
| 설립배경 | 1974년 "노동법"에서 필리핀 노동자들의 해외취업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해외 각국으로 떠나는 이주자들을 등록, 모니터링할 기구의 설립을 명시<br>The Overseas Employment Development Board(OEDB) 해외고용발전국 설립 | 필리핀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는 사람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 |
| 법체계 | 1982년 "Presidential Decree No. 797"에 근거하여 설립 - 해외고용개발국 + 국가선원국 + 고용서비스국 = 필리핀해외고용청(1982) | 1980년 "Batas Pambansa(Republic Act) 79"를 근거로 하여 설립 |
| 내용 | 노동고용부(Department of Labour and Employment) 산하에 설립된 정부기구 | 대통령 직속 정부 기관(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Philippines) |
| 위치 | 단신이주를 장려하고, 이주노동자의 가족 생계비용과 이주비용을 가족 부조 기금을 통해 미리 대출해준 후 이를 갚아나가게 하는 정책 | 재외필리핀인들의 국가정체성 고취와 본국과의 유대관계 지속, 본국에 투자유치 촉진 |
| 기능 | 해외고용 비즈니스(각국의 해외노동력 필요를 파악하고 적절한 노동자를 파견)<br>해외필리핀노동자의 이탈을 막고 송금을 계속하도록 유도 | ① 필리핀 대통령과 의회에 재외필리핀인과 관련된 정책과 수단을 체계화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br>② 재외필리핀인들의 이해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br>③ 재외필리핀인들과 모국 간의 사회 · 경제 · 문화적 유대를 보존, 강화하는 포럼 역할<br>④ 재외필리핀인들이 필리핀 내에서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적절한 정부 및 민간기관들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 |
| 목적 | 높은 실업률과 불완전고용률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자 송출, 노동자들에게 부가적인 기술 훈련 제공, 외국의 노동자의 송금으로 인한 외화 증가 | 필리핀과 재외필리핀인(해외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필리핀인, 이는 외국 국적 취득 여부와 관계없으며 그들의 자손들까지 포함한다(〈Batas Pambansa 79 제2조〉) 사이의 경제적, 문화적 유대를 증진 |

또한, 해외 송출 노동자와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노동고용부(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DOLE)의 관할 아래에 있는 해외노동자복지청(Overseas Workers Welfare Administration: OWWA)이다. 해외노동자복지청은 1987년 아키노 정권 하에 설립되었다. 모든 해외 필리핀노동자는 계약 시에 25$의 기부금을 내어 'OWWA

멤버'가 되어 그 돈이 해외 필리핀노동자의 복지서비스에 사용된다.[7] 해외 필리핀노동자가 도항 전에 사망하거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원조하거나 귀국지원, 의료지원, 목적국에서의 법적지원 및 돌봄, 그리고 귀국자를 위한 자립생계지원 및 재통합프로그램, 해외 필리핀노동자의 가족에게는 장학금제도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DAWN 2005, 19). 재외필리핀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필리핀노동자가 많이 있는 국가나 지역의 재외공관에는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여, 외무부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외무부(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DFA)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관계 외국기관에 해외 필리핀노동자들과 재외필리핀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대표단을 만들어 보내고, 곤경에 처한 필리핀인들을 보호하고 송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 밖에도, 노동고용부 산하에는 필리핀이주노동사무소(Philippine Overseas Labour Office: POLO)와 기술교육기능개발청(Technical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Authority: TESDA)이 있다. 필리핀이주노동사무소는 노동부장관실 직속에 있으며, 노동고용부의 해외업무를 담당하고, 해외 필리핀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한다. 아시아, 중동, 미국, 유럽 등지에 30곳 이상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문화관광부 외 2006, 18). 한편, 기술교육기능개발청은  직업훈련과 기술인증을 하는 정부기관으로 1994년 라모스 정권하에 설립되었다.

### 3) 재외필리핀인 우대정책

필리핀의 대표적인 재외동포정책은 계엄령 하의 마르코스 정권에서 1973년 '귀국작전(Operation Homecoming)'으로 전개된 'Balikbayan(귀국한 국민)' 우대정책이다. 이것은 재미필리핀인에 초점을 맞춘 고국방문촉진정책으로 항공권비용 할인, 비자연장, 마닐라 도착시의 입국수속우대 등을 내용에 포함했다(Okamura 1998, 123;  小ケ谷 2005, 121 재인용). 이 'Balikbayan' 정책은 당시 계엄령 하의 필리핀의 정치, 경제상황을 재외필리핀인에게 직접 알려서 필리핀에 대한 인상을 좋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Basch et al. 1994, 257).

당초 'Balikbayan'의 의미에는 모든 재외필리핀인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1980년대에는 그 대상이 외국에서 시민권과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과 그 가족으로 한정되었다(전게서, 265). 아키노 정권 하에 1989년에 제정된 'Balikbayan Law(공화국법 6768호)'에 의해 'Balikbayan'은 세 가지로 즉, ①외국 여권을 가진 예전 필리핀시민 및 그와 동행하는 배우자와 자녀들, ②1년간 계속해서 필리핀을 떠나있는 필리핀인, ③필리핀인 해외계약노

7) 해외노동자복지청의 기금은 자금부족 및 정치자금으로 전용되는 등 운용방식의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되어 왔다(김민정 2006).

동자와 같이 확장된 정의를 가지게 되었다. 이 법에 따라 'Balikbayan'은 ①통행세 면제, ②외국여권 소지자의 경우, 1년간 비자없이 필리핀 체류 가능, ③미화2천 달러까지 구입품에 대한 면세(단, 도착 후 2일 이내로, 1년에 한번 본인이 구입했을 경우에 해당)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의 최대의 특징은 이전에 제외되던 해외의 필리핀노동자까지 'Balikbayan'의 범주가 확대된 것이다. 아키노 정권은 신헌법에서 '재외국민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권리를 보장 받는다'(Gonzalez 1998, 121)고 명언하여, 재외국민을 필리핀의 국가통합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정책을 진행시켰다.

즉,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의 'Balikbayan'정책은 주로 영구적 이주자인 필리핀인을 대상으로 관광 및 소비촉진 및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아키노 정권 이래로 'Balikbayan'은 해외 필리핀노동자까지 포함하게 되어, '현대의 영웅(Bagong Bayani)'으로 칭해졌다.[8] 이것은 마르코스 정권 하의 단기적 개발정책으로 처음 시작되었던 해외고용정책이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장기적 정책의 하나로 위치되었다는 점과 동시에 필리핀정부가 재외국민을 포괄하는 형태로 본격적인 국가형성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小ケ谷 2005, 125).

## 4. 재외필리핀인과 송금

이주와 송금은 1970년대에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석유가격이 폭등하여 걸프지역 국가들에서 점차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커져갔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주와 송금은 필리핀 경제에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되어갔다(Bayangos 외 2011, 1836). 국제수지의 악화에 따라 외화 획득에 혈안이 되어 있던 필리핀정부는 1984년에 대통령령으로 해외노동자에게 일정 비율의 송금을 보내도록 의무화했다.[9] 위반자에게는 여권 발급 및 고용계약 갱신을 금지하는 등의 벌칙을 두어 제한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1985년에 이 벌칙은 폐지되었으나, 필리핀의 외화획득수단으로 정부가 해외의 필리핀노동자의 송금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지 보여준다(佐藤 2006, 268; 笹川 2010, 100).

2013년의 재외필리핀인의 송금액은 23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표 2〉는 필리핀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의 기록에 따른 송금의 추이를 나타내

8) 필리핀정부는 해외에서의 공동체 활동과 큰 공헌을 한 해외 필리핀노동자를 대상으로 '현대의 영웅상(Bagong Bayani Award)'를 설립하여, 매년 표창하고 있다. 이 표창을 관할하는 곳은 필리핀해외고용청이지만, 재외필리핀인위원회에서도 '대통령상(Presidential Award)'를 만들어 재외필리핀인의 필리핀에 대한 공헌을 표창하고 있다(小ケ谷 2005, 133).

9) 직종에 따라 송금기준이 달랐다. 선원은 소득의 80%, 간호사, 의사, 기술자 등 전문직 노동자로 식사와 주거를 무료로 지급받는 사람은 소득의 70%, 식사와 주거를 무료로 제공받지 않는 전문직 노동자 및 가사노동자는 소득의 50% 이상을 송금으로 보내도록 했다(佐藤 2006, 268).

는데, 필리핀에서 송금의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 송금이 GDP에 차지하는 비율과 함께 나타냈다. 여기서 사용하는 자료는 필리핀중앙은행이 제공하는 송금액의 기록이며, 이것은 단지 은행시스템을 통한 송금의 흐름만 파악한 것이고, 재외필리핀인이 귀국 시에 직접 가져온 돈 또는 (일시) 귀국하는 다른 필리핀인에게 전달을 부탁한 돈, 혹은 지하연결망을 이용한 송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송금 등 파악되지 않는 금전의 이동은 상당히 많다.[10]

더욱이, 정규적인 방식으로 송금을 할 경우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필리핀 국내에서 해외로부터의 송금서비스를 다루는 회사는 급증하여, 현재 필리핀 내에 4740개소에 이른다. 이와 같은 증가는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송금서비스업 자체가 상당히 수익을 가져오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관련 회사들은 송금액의 4%내외를 수수료로 받기 때문에, 해당업계 전체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매상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11]

한편, 〈표 3〉은 정확한 송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완벽히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송금 추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내릴 수 있다. 2013년도에 재외필리핀인이 보내오는 송금액은 1996년도의 송금액의 5배 이상에 달했다. 재외필리핀인들이 보내오는 송금은 1990년대 중엽에는 GDP의 5.2%를 기록했으나, 1990년대 후반 이래로 GDP의 10%정도를 유지할 정도로 필리핀의 GDP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자리 잡았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재외필리핀인 1명이 국내에 있는 5명의 필리핀인을 '먹여 살린다'고 한다(Asian Migrant Centre 외 2001, 66-67). 1,000만 명이 넘는 재외필리핀인은 5,000만 명 정도, 즉 필리핀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구의 생활을 유지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필리핀 총 인구의 20~25%가 재외필리핀인의 가족에 해당하며, 이들 가족이 필리핀의 소비경제를 선도하여 유통, 오락, 교육, 부동산 등 기타 서비스 산업을 확대시키고 있다(佐竹 2009, 95). 재외필리핀인은 은행, 송금업자 등을 통해, 모국의 가족, 친척에게 송금한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척 또는 귀국한 해외 필리핀노동자들이 주택이나 토지를 구입하여, 부동산업이 성장한다. 필리핀의 어느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재외필리핀인의 송금 혜택을 받는 필리핀인들에 대한 부동산 판매가 필리핀의 대규모부동산회사의 이익의 41%를 차지한다고 한다.[12] 이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쇼핑몰 건설 및 사립학교의 건립도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재외필리핀인들의 송금으로 인한 소비경제의 발달 및 재외필리핀인들의 본국의 자녀교육으로 사립학교를

10) 보스(Vos 1992)는 세대조사를 통해 은행시스템에 기록되지 않는 송금을 평가하여, 기록된 송금은 단지 전체 송금액의 반 정도만을 커버할 뿐이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국가통계청(Nationa Statistics Office: NSO)이 재외필리핀인에 대해 매년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재외필리핀인들의 송금 경로로 추적하여, 같은 결론을 제시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송금액은 전체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Bayangos 외 2011, 1837).

11) "海外就労者(OFW)からの年間総金額　史上最高を記録" 〈Philippines Inside News〉, 19 Febrary 2014.

12) "OFWs boost Robinson Land housing sales," 〈Philippines Daily Inquirer〉, 11 April 2008.

선호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佐竹 2009, 95). 이와 같이, 재외필리핀인이 보내오는 송금으로 인한 필리핀의 풍경 변화나 필리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만큼이나, 필리핀 경제의 재외필리핀인들의 송금에 대한 의존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재외필리핀인이 보내오는 송금의 추이**

| 연도 | 기준(US$B) | GDP 차지 비율(%) |
|---|---|---|
| 1996 | 4.3 | 5.2 |
| 1997 | 5.7 | 7.0 |
| 1998 | 7.4 | 11.3 |
| 1999 | 6.0 | 8.9 |
| 2000 | 6.1 | 8.0 |
| 2001 | 6.0 | 7.9 |
| 2002 | 6.9 | 8.4 |
| 2003 | 7.6 | 8.9 |
| 2004 | 8.6 | 9.1 |
| 2005 | 10.7 | 10.8 |
| 2006 | 12.8 | 10.9 |
| 2007 | 14.5 | 10.0 |
| 2008 | 16.4 | 9.9 |
| 2009 | 17.4 | 10.8 |
| 2010 | 18.8 | 11.2 |
| 2011 | 20.1 | 10.1 |
| 2012 | 21.4 | 9.5 |
| 2013 | 23.0 | 9.2 |

자료: Department of Economic Statistics, Bangko Sentral ng pilipinas.

## Ⅲ. 나가며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필리핀인의 해외이주는 중요한 국가사업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리핀의 해외로의 노동력 수출과 해외로 나간 필리핀인들이 보내오는 송금은 국가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 필리핀정부는 재외필리핀인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필리핀과 연계를 맺도록 하고, 필리핀으로 지속적으로 송금을 보내게 하는 등 재외필리핀인들이 언제나 필리핀을 향해 있도록 다양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일시적 계약노동자로서 해외로 나갔던 필리핀인들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오게 되면, 필리핀 내부에서 취업이 어렵거나, 아니면 힘들게 취업 혹은 창업을 하더라도 해외에서 벌어들이던 수익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낮은 수입을 벌게 될 경우 금방 노동의욕을 상실하게 되어 다시 해외에서의 취업을 희망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귀국을 하더라도 다시 이주를 준비하는 상황에 놓이기 십상이다. 이 가운데, 가족해체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필리핀은 자생적 경제발전 보다는 글로벌적으로 벌어들이는 해외 필리핀노동자들의 송금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거의 40년간을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듯이 보인다.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외 필리핀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인신매매 상황은 전 세계적인 각성은 물론이고, 필리핀이라는 국가의 힘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노동력 수출과 해외로부터 오는 송금에 의존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필리핀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가져오는 해법일 수가 없다(Asis 2008). 해외 필리핀노동자를 '국가적 영웅'으로 지칭하고, 필리핀인들에게 이주노동을 꿈꾸게 한 필리핀의 해외이주 관련 법제도는 이제 필리핀인들이 필리핀에서도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재편성되어야만, 필리핀인들이 본국에서의 지속가능한 삶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문화관광부 · IOM국제이주기구. 2006.『2006 외국인 연예인 도입 실태조사 및 정책 비교 연구』.
- 김민정. 2006. "동아시아 정세분석: 필리핀 이주노동의 현실과 정부정책의 명암."『동아시아 브리프』1(4): 66-69.
- 이혜진. 2013. "식민지배와 필리핀 민족의 형성."『민족연구』55: 75-98.
- Abrera-Mangahas, Alcestis. 1987. *Filipino Overseas Migration: Focus on 1975-1986*. (SMC paper 1). Quezon City: Scalabrini Migration Center.
- Alegada, Dean Tiburcio. 1992.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from the Philippin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 Asian Migrant Centre, Asia South Pacific Bureau for Adult Education and Migrant Forum in Asia. 2001. *Clearing a Hurried Path: Study on Education Programs for Migrant Workers in Six Asian Countries*. AMC, ASPBAE and MFA.
- Asis, M., M. B. 2008. "How international migration can support development: a challenge for the Philippines" in Castles, S. and Delgado Wise, R. (eds.) *Migration and Development: Perspectives from the South.* Genev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 Bayangos, Veronica and Jansen Karel. 2011. "Remittances and Competitiveness: The Case of the Philippines." *World Development* 39(10): 1834-1846.
- Burgess, Robert and Vikram Haksar. 2005. *Migration and Foreign Remittances in the Philippine.* IMF Working Paper WP/05/11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Center for Migrant Advocacy Philippines. 2004. *FACT SHEET: Overseas Absentee Voting Law*.
- Gonzales, Joaquin Ⅲ. 1998. *Philippine Labour Migration: Critical Dimensions of Public Policy.*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Griffiths, Stephen. 1988. *Emigrants, Entrepreneurs, and Evil Spirits: Life in a Philippine village*.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Hosoda, Naomi.1996. "Filipino Women in the Japanese Entertainment Industry." In J. Lele and W. Tettey (eds.), *Asia: Who Pays for Growth?* Aldershot UK and Brookfield USA: Dartmouth Publishing.
- Neil G. Ruiz. August 11, 2008. "Managing Migration: Lessons from the Philippines." *Migration and Development* Brief 6 : Migration and Remittances Team

Development Prospects Group, The World Bank.
- Okamura, Jonathan Y., 1998, I*maging the Filipino American Diaspora: Transnational Relations, Identities, and Communities*. New York: Garland Publishing.
- Vos, R. P. 1992. "Foreign private asset accumulation, not just capital flight: Evidence from the Philippines."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28(3): 500-537.
- 小ケ谷千穂. 2005. "トランスナショナリズムと送り出し国家: フィリピン政府の在外国民政策'在外投票法'の成立から—." フェリス学院大学国際交流学部紀要『国際交流研究』7: 117-137.
- 佐竹眞明. 2009. "世界不況とフィリピン経済—海外依存ともう一つの発展をめぐって—."『名古屋学院大学論集社会科学編』46(1): 91-106.
- 佐藤忍. 2002. "フィリピンからみた外国人労働問題研究の現在." 大原社会問題研究所雑誌 529: 1-10.
- _____. 2006.『グローバル化で変わる国際労働移動—ドイツ、日本、フィリピン外国人労働力の新展開』東京: 明石書店.
- ドーン(Development Action for Women Network)編著. 2005. DAWN-Japan訳.『フィリピン女性エンターテイナーの夢と現実—マニラ、そして東京に生きる』東京: 明石書店.
- 細田尚美. 2010. "海外就労先を開拓し続けるフィリピン." 笹川平和財団 「人工変動新潮流への対処」研究.『外国人労働者問題をめぐる資料集Ⅰ』.

| Abstract |

# A Study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 of Migration in the Philippines

Hey Jin Lee, Hee Jae Kim, Song Sik Choi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hilippines is one of the states which has sent the labor force abroad.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ituation of the Philippines how it has been able to facilitate the emigration and promote the migration policy and institutional system for Overseas Filipino Workers and Overseas Filipinos in order to manage and protect them. This paper deals with the status of emigration of Filipinos, looking back the history of migration in the Philippines. Then it examines the laws and the related institutions and the policies that gives the benefit to the Overseas Filipinos. In addition, it revels that the role of remittances from Overseas Filipinos and the current migration policies.

〈Key words〉 the Philippines, migration, Overseas Filipino Workers, Overseas Filipino, migration policies